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4. 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3월 2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3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3. 31)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가.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과학을 육성하고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과 기구의 설치·운영 및 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영등포구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조)
- 과학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과학육성협의회의 설치, 구성, 임기, 구성사유, 주요기능 등을 명시함(안 제3조 내지 안 제14조)
-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지원하고자 과학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원활한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및 운용, 결산 및 보고 등을 명시(안 제15조 내지 안 제21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욱)

- 본 조례안은 과학을 육성하고 과학문화 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과학육성 및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 조성의 경우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과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

의안 번호	128
----------	-----

제출년월일 : 2008.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과학을 육성하고 과학문화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그에 대한 사항과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 적 (안 제1조)

과학을 육성하고 과학문화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과학육성협의회 (안 제3조에서 제14조까지)

○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

- 위원장(1명) : 부구청장

- 부위원장(1명) : 호 선

- 위 원 : 구 공무원, 구의원, 과학관련 전문가로 구성

○ 임기 : 2년(연임 가능)

○ 구성사유

- 영등포구 과학육성 및 과학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과학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 주요기능

-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 과학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과학육성기금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의 과학육성 및 과학문화도시 관련 필요한 사항 심의

다. 기금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지원키 위한 과학육성기금 설치
-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결산 및 보고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제정 조례 안 : 별첨

2) 입법예고 (2008. 2. 4 ~ 2. 25)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과학문화 증진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문화도시사업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제2장 과학육성협의회

제3조(협의회 설치) 영등포구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2. 과학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육성기금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과학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제2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영등포구에 재직 중인 국·과장급 공무원
3. 과학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협의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연2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능 및 기관, 단체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및 해외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사퇴·전보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당할 때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각 1명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실비보상) 본 협의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와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입금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육성·과학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2. 과학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 인재의 육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다.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한다.

제22조(포상) 구청장은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 추진에 매우 큰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